

1

별표

별표1]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

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

구분	위 반 사 항	처 리 기 준
심 각	<p>1.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</p> <p>가.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,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</p> <p>나. 개인정보·신상정보 목록</p> <p>다. 비공개 항공사진·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</p> <p>2.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</p> <p>가.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</p> <p>나.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</p> <p>다.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참여 제한 ◦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◦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◦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
중 대	<p>1.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</p> <p>가.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</p> <p>나.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·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</p> <p>다. 개인정보·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</p> <p>라.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</p> <p>2. 사무실·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</p> <p>가.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</p> <p>나.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</p> <p>다. 통제구역 내 장비·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</p> <p>3.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</p> <p>가.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,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</p> <p>나. 웹하드·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</p> <p>다. 개발·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</p> <p>라.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</p> <p>마.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</p> <p>바.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</p> <p>사.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</p> <p>아.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(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◦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◦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

구분	위 반 사 항	처 리 기 준
보 통	<p>1. 기관 제공 중요정책·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. 주요 현안·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. 정책·현안자료를 휴지통·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</p> <p>2.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. 캐비닛·서류함·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.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</p> <p>3.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. 통제·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.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</p> <p>4.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.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·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.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.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(CD, USB 등)를 꽂아 놓고 퇴근 라. 부팅·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"1111" 등 단순 숫자 부여 마.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.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◦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◦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
경 미	<p>1.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.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, 퇴근 나. 복사기·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</p> <p>2.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.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. 경보·보안장치 작동 불량</p> <p>3.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.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.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반자 서면·구두 경고 등 문책 ◦ 위반자 경위서 제출

[별표2]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

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

○ 위규 수준별로 A~D 등급으로 차등 부과

구 분	위 규 수 준			
	A급	B급	C급	D급
위 규	심각1건	중대1건	보통 2건이상	경미3건이상
위약금	부정당업자등록	500만원이하	300만원이하	100만원이하

○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,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

○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

[별표3] 장애처리 점검표

장애처리 점검표

시스템 (업무명)					작업자	(인)			
					업무담당자	(인)			
장애발생	2020년	월	일	시 분	도착시간	2020년	월	일	시 분
수리시작	2020년	월	일	시 분	수리완료	2020년	월	일	시 분
장애내용									
조치내용									
향후계획									
장애부품					교체부품				
제조사		부품명			제조사		부품명		

보안서약서

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한다
2.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3.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.
4.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
	년	월	일			
서약자	소속	직급	생년월일			
	(업체대표)	직위	성명			인
서약	소속	직급				
집행자		직위	성명			인

개인정보수집동의

(←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소속)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,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.(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)

누출금지 대상정보

1.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·외부 IP주소 현황
2.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
3. 사용자계정·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
4.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물
5.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
6. 예원예술대학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
7. 침입차단시스템·방지시스템(IPS)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·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
8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
9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
10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14조의 (비밀문서의지출)
11.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

[별표7]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(안)

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(안)

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발주자” 라 한다)과 △△△(이하 “사업자” 라 한다)는 “발주자”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“사업자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은 “발주자”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“사업자”에게 위탁하고, “사업자”는 이를 승낙하여 “사업자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 “사업자”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(_____)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
- 2.

제4조 (재위탁 제한) ① “사업자”는 “발주자”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“발주자”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② “사업자”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“사업자”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“발주자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“사업자”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제3항 및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① “사업자”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“사업자”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발주자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“사업자”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“발주자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“발주자”는 “사업자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사업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“발주자”는 “사업자”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사업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“발주자”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“사업자”를 교육할 수 있으며, “사업자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“발주자”는 “사업자”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8조 (손해배상) ① “사업자” 또는 “사업자”의 임직원 기타 “사업자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“사업자” 또는 “사업자”의 임직원 기타 “사업자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“발주자”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사업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“발주자”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“발주자”는 이를 “사업자”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발주자”와 “사업자”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발주자

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예원대학로 56

예원예술대학교

성 명 :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(인)

사업자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

성 명 : (인)

[별표8] 외주용역 업체 보안교육 확인서

외주용역 업체 보안교육 확인서

1.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(※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)
2. 용역업체는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,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.
 - 가. 네트워크 장비 설치·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, 본교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
 - 나.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S/W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, 또한 용역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된 외부장비(노트북, 보조기억매체)는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.
 - * 단, 2일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S/W를 시에서 제공한 PC에 설치·활용
 - * 비인가 PC를 행정망에 연결 시 처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(백신, 보조기억매체 차단, 무선인터넷 차단 등) 자동 설치되므로 반출 시 정상적인 사용 불가함.
3. 용역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·관리하여야 하며,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.
4.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.
5.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, 「국가보안법」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.
 - 가. 기관소유 정보시스템의 내·외부 IP 주소
 - 나.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
 - 다. 사용자계정·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
 - 라.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물
 - 마.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
(유출 시 안보·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)
 - 바. 예원예술대학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
 - 사. 침입차단시스템·방지시스템(IPS)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·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정보
 - 아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
 - 자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
 - 차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14조의 비밀문서의 지출
 - 카.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
6. 사업수행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